|  |  |  |
| --- | --- | --- |
| **출판 관리조례**  (2001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343호 공표, 2011년 3월 19일 《<출판 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출판활동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출판 산업과 출판사업을 발전 및 번영시키고 법에 의한 공민의 출판자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종사하는 출판활동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지칭하는 출판활동에는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 발행이 포함된다.  이 조례에서 출판물이라 함은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음반 영상제품, 전자출판물 등을 가리킨다.  **제3조** 출판활동은 반드시 국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와 레닌, 모택동사상, 등소평 이론 및 “3가지 대표”의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하며, 과학발전관을 관철 집행하고 민족의 소질제고와 경제발전, 사회진보에 유익한 과학기술과 문화지식을 전파, 축적하며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발양하고 국제문화교류를 촉진하며 인민의 정신적 생활을 풍요히 하고 제고시켜야 한다.  **제4조** 출판활동에 종사 시에는 사회적 효과를 최고로 하며,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의 결합을 실현해야 한다.  **제5조** 공민은 법에 따라 출판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며, 각급 인민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공민은 출판자유의 권리를 행사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거나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과 기타 공민의 합법적 권익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는 전국 출판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국무원 기타 유관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 분담에 따라 출판활동과 관련되는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출판관리부서(이하 출판행정주무부서라 함)는 본 행정구역 내의 출판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타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출판활동과 관련되는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7조** 출판행정주무부서는 그가 취득한 불법용의 증거나 제보에 근거하여 불법 용의가 있는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 발행 등의 행위를 조사 처벌할 때 불법용의와 관련되는 물품과 사업장소를 검사할 수 있으며, 불법 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제8조** 출판업계의 사회단체는 그 정관에 따라 출판행정주무부서의 지도하에서 자율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출판단위의 설립 및 관리**  **제9조**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음반 영상제품 및 전자출판물 등은 출판단위에서 출판한다.  이 조례에서 지칭하는 출판단위에는 신문사, 정기간행물 출판사, 도서출판사, 음반 영상제품 출판사 및 전자출판물 출판사 등이 포함된다.  법인이 신문, 정기간행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신문사, 정기간행물 출판사를 설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설립한 신문편집부, 잡지편집부를 출판단위로 간주한다.  **제10조** 국무원 출판행정부주무서는 전국 출판단위의 총량, 구조, 배치계획을 제정하여 출판 산업과 출산사업의 발전을 지도, 조율한다.  **제11조** 출판단위를 설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판단위 명칭과 정관이 있을 것  (2)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주최단위 및 그 주관기관이 있을 것  (3) 확정된 업무범위가 있을 것  (4) 30만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금과 고정적 사업장소가 있을 것  (5) 업무범위에 필요한 조직기구와 국가의 자격요건 규정에 부합되는 편집 출판전문인원이 확보되었을 것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요건.  출판단위의 설립을 심사 시에는 전 항에 열거한 요건 이외에 국가의 출판단위 총량, 구조, 배치계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12조** 출판단위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최단위가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에 신청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를 받는다. 설립한 출판단위가 사업단위인 경우에는 기구편제 심사 허가 수속을 별도로 필해야 한다.  **제13조** 출판단위 설립 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출판단위의 명칭과 주소  (2) 출판단위의 주최단위 및 그 주관기관의 명칭과 주소  (3) 출판단위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 주소, 자격 증명문건  (4) 출판단위의 자금원 및 금액.  신문사, 정기간행물 출판사 또는 신문편집부, 잡지편집부를 설립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명칭, 발간기일, 판형이나 지면, 인쇄장소를 기재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출판단위의 정관과 출판단위를 설립하는 주최단위 및 그 주관기관의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는 출판단위 설립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는 서면으로 주최단위에 통지한다.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5조** 출판단위를 설립하는 주최단위는 허가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에 등기하고 출판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등기사항은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에서 규정한다.  출판단위가 출판허가증을 수령한 후 사업단위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출판허가증을 소지하고 사업단위 등기관리기관에 가서 등기하고 법에 따라 사업단위 법인증서를 수령하며, 기업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출판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기하고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제16조** 신문사, 정기간행물 출판사, 도서출판사, 음반 영상제품 출판사 및 전자출판물 출판사 등은 법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심사 등기를 거쳐 법인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그 법인의 모든 독립적 재산으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 조례 제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단위로 간주하는 신문편집부, 잡지편집부는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며, 그 민사상 책임은 그 주최단위가 부담한다.  **제17조** 출판단위가 명칭，주최단위 또는 그 주관기관, 업무범위, 자본구조를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립을 하거나 분지기구를 설립하거나 또는 신규 신문, 정기간행물을 출판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수속을 필해야 한다. 출판단위가 사업단위 법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허가문건을 소지하고 사업단위 등기관리기관에 가서 상응하는 등기수속을 필해야 하며, 기업법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허가문건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상응하는 등기수속을 필해야 한다.  출판단위가 전 항에 열거한 변경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최단위와 그 주관기관의 심사 허가를 득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출판단위가 사업단위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허가문건을 소지하고 사업단위 등기관리기관에 가서 변경등기 수속을 필해야 하며, 기업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허가문건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변경등기 수속을 필해야 한다.  **제18조** 출판단위가 출판활동을 정지 시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에 등록 비치하고 그 이유와 기한을 설명해야 한다. 출판단위가 출판활동을 정지하는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출판단위가 출판활동을 종료 시에는 주최단위가 신청을 제출하며 아울러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주최단위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에 가서 말소등기를 하고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한다. 출판단위가 사업단위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허가문건을 소지하고 사업단위 등기관리기관에 가서 말소등기 수속을 필해야 하며, 기업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허가문건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말소등기 수속을 필해야 한다.  **제19조** 도서출판사, 음반 영상제품 출판사 및 전자출판물 출판사가 등기일로부터 180일이 되어도 출판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신문사, 정기간행물 출판사가 등기일로부터 90일이 되어도 신문, 정기간행물을 출판하지 아니할 경우 그 등기수속을 처리한 출판행정주무부서는 등기말소를 처리하며, 아울러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한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전 항에 열거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출판단위는 그 등기처리를 한 출판행정주무부서에 연기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 도서출판사, 음반 영상제품 출판사 및 전자출판물 출판사의 연도 출판계획과 국가안전, 사회 안정 등 면과 관련되는 중대한 주제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해야 하며, 중대한 주제와 관련되나 출판 전에 등록 비치하지 아니한 출판물은 출판을 할 수 없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가 제정한다.  정기간행물 출판사의 중대한 주제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제21조** 출판단위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게도 본 단위 명칭, 도서번호(ISBN), 연속간행물번호(ISSN/CN) 또는 레코딩 코드(ISRC), 지면을 매각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양도를 할 수 없으며, 본 단위 명칭, 간행물 번호를 임대할 수 없다.  출판단위 및 그 종업인원은 출판활동을 이용하여 기타의 부당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출판단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 중국버전도서관 및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에 무상으로 납본해야 한다.  **제3장 출판물의 출판**  **제23조** 공민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판물을 통해 국가사무, 경제 및 문화사업, 사회사무에 대한 견해와 소원을 자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가 종사하는 과학연구, 문학예술창작 및 기타 문화 활동성과를 자율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합법적인 출판물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누구든지 출판물의 출판을 불법 간여, 저애하거나 파괴하지 못한다.  **제24조** 출판단위는 편집책임 제도를 실시하여 출판물에 등재하는 내용이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5조** 출판물에 아래의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전을 해치는 내용  (3)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국가영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4) 민족의 증오, 민족의 차별시를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또는 민족의 풍속,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5) 사교, 미신을 퍼뜨리는 내용  (6)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도박, 폭력을 퍼뜨리거나 범죄를 사교하는 내용  (8) 타인을 모욕,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사회공덕이나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해치는 내용  (10)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26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판물은 미성년자들의 사회공덕 위배 행위와 불법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해치는 공포, 잔혹 등의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출판물의 내용 부실이나 불공정으로 인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그 출판단위는 정정하고 영향을 제거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기타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신문, 정기간행물에 발표된 작품의 내용 부실이나 불공정으로 인해 공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당사자는 유관 출판단위에 정정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관 출판단위는 최근에 출판하는 신문, 정기간행물에 발표해야 한다. 발표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8조** 출판물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자, 출판자, 인쇄자 또는 복제자, 발행자의 명칭, 주소, 도서번호, 연속간행물번호 또는 레코딩 코드, 목차 내용, 출판일자, 발간주기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출판물의 규격, 판형, 지면 배치, 장정, 교정 등은 국가표준과 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출판물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출판물에 사용하는 언어문자는 반드시 국가의 법률 규정과 관련 표준,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9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출판단위 명칭이나 신문, 정기간행물 명칭을 위조, 도용하여 출판물을 출판하지 못한다.  **제30조** 중소학교 교과서는 국무원 교육행정주무부서가 심사 결정하며, 그 출판, 발행단위는 마땅히 교과서 출판, 발행업무에 필요한 자금, 조직기구 및 인원 등 요건을 갖추고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가 부여한 교과서 출판, 발행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정부 조달범위에 속하는 중소학교 교과서를 발행하는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하며, 기타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중소학교 교과서의 출판, 발행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장 출판물의 인쇄 또는 복제와 발행**  **제31조** 출판물 인쇄나 복제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에 신청하여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필한 후에야 출판물의 인쇄나 복제에 종사할 수 있다.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관련 수속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를 인쇄하지 못하며, 음반 영상제품, 전자출판물을 복제하지 못한다.  **제32조** 출판단위는 출판물 인쇄 또는 복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단위에 출판물의 인쇄나 복제를 위탁할 수 없다.  출판단위가 출판물을 인쇄하거나 또는 복제단위가 출판물을 인쇄하거나 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출판물 인쇄 또는 복제 관련 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인쇄 또는 복제단위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인쇄 또는 복제단위는 비출판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고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를 인쇄하거나 또는 음반 영상제품, 전자출판물을 복제하지 못하며, 제멋대로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를 인쇄, 발행하거나 음반 영상제품, 전자출판물을 복제, 발행하지 못한다.  **제33조** 인쇄 또는 복제단위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의 허가를 득하고 경외 출판물의 인쇄나 복제업무를 수주할 수 있다. 다만, 인쇄 또는 복제하는 경외 출판물은 반드시 전부 경외로 수송해야 하며, 경내에서 발행하지 못한다.  경외에서 위탁한 인쇄 또는 복제 출판물의 내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가 심사한다. 위탁인은 저작권자의 위임장을 소지해야 하며, 아울러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해야 한다.  **제34조** 인쇄 또는 복제단위는 출판물의 인쇄나 복제를 완료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수주 받은 출판물의 샘플 1통을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35조** 출판물 총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출판물 도매업에 종사하는 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판물 소매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현급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판물 체인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본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 성 경계를 벗어나거나 전국 범위 내에서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본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사업자는 출판행정주무부서의 허가를 거쳐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36조**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출판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사업자는 마땅히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터넷거래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을 통해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주체 신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검증해야 한다.  **제37조**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사업자가 《출판물 경영허가증》의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겸병, 합병 또는 분립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수속을 필하고 아울러 그 허가문건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상응하는 등기수속을 필해야 한다.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사업자가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말소등기 수속을 하고 원 허가 출판물행정주무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38조** 출판단위는 그가 출판한 출판물을 발행할 수 있으며, 기타 출판단위가 출판한 출판물은 발행할 수 없다.  **제39조** 국가는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전자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또는 외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한다.  **제40조** 인쇄 또는 복제단위, 발행단위는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출판물을 인쇄하거나 복제하지 못한다.  (1) 이 조례 제25조, 제26조의 금지 내용이 있는 출판물  (2) 불법 수입한 출판물  (3) 단위명칭이나 신문, 정기간행물의 명칭을 위조, 가장한 출판물  (4) 출판단위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출판물  (5) 법적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중소학교 교과서  (6)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출판물.  **제5장 출판물의 수입**  **제41조** 출판물 수입 업무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출판물 수입경영단위가 경영하며, 기타 단위와 개인은 출판물의 수입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42조**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를 설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판물 수입경영단위 명칭, 정관이 있을 것  (2)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주최단위 및 그 주관기관이 있을 것  (3) 명확한 업무범위가 있을 것  (4) 수입 출판물 내용 심사능력을 구비할 것  (5) 출판물 수입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것  (6) 고정된 사업장소를 확보할 것  (7)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요건.  **제43조**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를 설립하려면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에 신청하여 심사 허가를 받은 후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가 발급한 출판물 수입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울러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를 설립 시에는 대외무역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속을 필해야 한다.  **제44조** 출판물 수입경영단위가 명칭, 업무범위, 자본구조, 주최단위 또는 주관기관을 변경하거나 합병이나 분립을 하거나, 분지기구를 설립 시에는 이 조례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수속을 필해야 하며, 아울러 허가문건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상응하는 등기수속을 필해야 한다.  **제45조** 출판물 수입경영단위가 수입하는 출판물에는 이 조례 제25조, 제26조의 금지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는 그가 수입하는 출판물에 대한 내용심사를 책임진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는 출판물 수입경영단위가 수입한 출판물의 내용에 대해 직접 심사할 수 있다. 출판물 수입경영단위가 그가 수입하는 출판물이 이 조례 제25조, 제26조의 금지내용이 포함되는 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에 내용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는 출판물 수입경영단위의 요청에 따라 수입 출판물에 대한 내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가격주무부서의 요금기준에 따라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는 특정 출판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46조**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는 출판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할 출판물 목차를 성급 이상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에서 수입을 금지하거나 당분간 금지하는 출판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판물 수입경영단위에 통지하고 동시에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는 수입 금지 또는 임시 수입금지 통보를 받은 출판물을 수입할 수 없으며, 세관은 통관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  수입 출판물의 등록비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가 제정한다.  **제47조** 수입 출판물을 발행 시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한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를 통해 수입해야 한다.  **제48조** 출판물 수입경영단위가 경내에서 경외 출판물 전시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경외 출판물 전시회를 소집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하는 경외출판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국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6장 감독과 관리**  **제49조** 출판행정주무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출판단위의 출판활동에 대한 일상적 감독 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출판단위의 주최단위 및 그 주관기관은 소속 출판단위의 출판활동에 대한 직접적 관리책임을 지며, 출판행정주무부서를 협조하여 소속 출판단위에서 제반 관리규정을 집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출판단위와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는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의 규정에 따라 출판활동과 출판물 수입활동에 종사한 상황을 서면으로 출판행정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50조** 출판행정주무부서는 아래의 직책을 수행한다.  (1) 출판물의 출판, 인쇄, 복제, 발행, 수입단위에 대한 업계 감독관리와 진출 관리  (2) 출판활동을 감독하고 이 조례 위반행위를 조사 처벌  (3) 출판물 내용과 질을 감독  (4)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출판 종업인원에 대한 관리.  **제51조** 출판행정주무부서는 관련 규정과 기준에 근거하여 출판물의 내용, 편집과 교정, 인쇄 또는 복제, 장정다자인 등 면의 품질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제52조**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는 출판단위 종합평가 방법을 제정하여 출판단위에 대한 분류별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발행 및 수입경영단위가 행정허가의 법정요건에 더는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출판행정주무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은 행정허가를 취소한다.  **제53조** 국가는 출판단위에서 출판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 직업자격 제도를 실시하며, 출판 전문기술인원은 국가의 전문기술인원 자격 고시에 통과하고 전문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주무부서,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에서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7장 보장과 장려**  **제54조** 국가는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출판 산업과 출판사업의 발전 및 번영을 보장하고 촉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아래의 우수하고 중점적인 출판물의 출판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의 논술, 전파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출판물  (2) 사회주의 핵심적 가치체계를 발양하고 인민대중에게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및 민족단결 교육을 진행하고 사회공덕, 직업윤리, 가정미덕을 발양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는 출판물  (3)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발양하고 국제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대한 작용을 하는 출판물  (4) 문화혁신을 추진하고 국내외의 새로운 과학문화성과를 제때에 반영하는데 중요한 공헌이 있는 출판물  (5) 농업, 농촌 및 농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공문화 서비스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출판물  (6) 기타 중요한 사상가치, 과학가치 또는 문화예술가치가 있는 출판물.  **제56조** 국가는 교과서의 출판발행을 보장한다.  국가는 소수민족 언어문자 출판물과 점자 출판물의 출판 발행을 지원한다.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 변경지역, 경제후진지역과 농촌에서 출판물을 발행하는 데 대해 우대정책을 실행한다.  **제57조** 신문, 정기간행물을 우체기업에 넘겨 발행하는 경우, 우체기업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정확하게 발행해야 한다.  출판물 운송업체는 출판물의 운송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58조**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 산업과 출판사업의 발전, 번영에 중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정려를 한다.  **제59조**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을 불법 방해하거나 저지 또는 파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출판행정주무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는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여 제지시켜야 한다.  **제8장 법적 책임**  **제60조** 출판행정주무부서 또는 기타 유관부서의 업무직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고 법정 설립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 발행단위 설립을 허가하거나 감독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아니하여 심각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강직, 나아가서는 제명 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의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직무 태만죄 또는 기타 범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61조** 허가를 받지 않고 자의로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 발행단위를 설립했거나 제멋대로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 발행업무에 종사하여 출판단위명칭을 도용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 명칭을 위조, 도용하여 출판물을 출판한 경우 출판행정주무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그 법정 직권에 따라 이를 취체하며, 형법의 불법 경영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 처벌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판물, 불법소득 또는 불법 활동에 사용한 전문기구, 설비를 몰수하며, 불법 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 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62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어 형법을 범한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 처벌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 출판행정주무부서에서 기한부 영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고 출판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 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정이 심각한 경우에는 원 증서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이 조례 제25조, 제26조의 금지내용이 있는 출판물을 출판, 수입하는 경우  (2) 출판물에 이 조례 제25조, 제26조의 금지내용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하거나 복제, 발행한 경우  (3) 타인이 이 조례 제25조, 제26의 금지내용이 있는 출판물을 출판하는 것을 분명히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본 출판단위의 명칭, 도서번호, 연속간행물번호, 레코딩 코드, 판형을 매각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본 단위 명칭, 연속간행물번호를 임대한 경우.  **제63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출판행정주무부서는 불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출판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 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정이 심각한 경우에는 기한부 영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또는 원 증서 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가 수입을 금지하는 출판물을 수입, 인쇄하거나 또는 복제, 발행한 경우  (2) 밀수한 경외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한 경우  (3) 발행한 수입 출판물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로부터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 출판물을 밀수한 경우 형법의 밀수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 처벌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세관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가한다.  **제65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출판행정주무부서는 출판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 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정이 심각한 경우 기한부 영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원 증서 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출판단위가 출판물 인쇄 또는 복제 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단위에 출판물의 인쇄 또는 복제를 위탁한 경우  (2) 인쇄 또는 복제단위가 인쇄 또는 복제 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한 경우  (3) 인쇄 또는 복제단위가 비출판단위나 개인에게 출판물의 인쇄 또는 복제를 위탁한 경우  (4) 인쇄 또는 복제단위가 법정 수속을 밟지 않고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한 경우, 인쇄 또는 복제한 경외 출판물을 전부 경외로 수송하지 아니한 경우  (5) 인쇄 또는 복제단위, 발행단위 또는 개인사업자가 출판단위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 발행한 경우  (6) 출판, 인쇄, 발행단위가 법적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중소학교 교과서를 출판, 인쇄, 발행하거나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지정한 단위에서 중소학교 교과서의 출판, 발행업무에 종사한 경우.  **제66조** 출판단위가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출판행정주무부서는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고 불법 경영한 출판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 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정이 심각한 경우에는 기한부 영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원 증서 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본 출판단위의 명칭, 도서번호, 연속간행물번호, 레코딩 코드, 판형을 매각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본 단위 명칭, 연속간행물번호를 임대한 경우  (2) 출판활동을 하는 기회를 타서 기타 부당이익을 도모한 경우.  **제67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출판행정주무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사정이 심각한 경우 기한부 영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원 증서 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출판단위가 명칭, 주최단위 또는 그 주관단위,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합병이나 분립을 하거나 신규 신문, 정기간행물을 출판하거나 또는 신문, 정기간행물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출판단위가 기타 사항을 변경함에 있어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판행정주무부서의 심사 허가, 변경등기 수속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2) 출판단위가 그 연도 출판계획과 국가안전, 사회의 안정 등 면과 관련되는 중대 주제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 출판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판물을 납본하지 아니한 경우  (4) 출판 또는 복제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비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출판물 수입경영단위가 그가 수입한 출판물 목차를 보고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출판단위가 출판활동을 중지한 기간이 180일 초과하는 경우  (7) 출판물 발행단위, 출판물 수입경영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변경 심사승인 수속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8) 출판물 질이 관련 규정과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68조** 허가 없이 경외 출판물 전시회를 소집한 경우 출판행정주무부서는 그 불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출판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사정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원 증서 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69조** 이 조례 제25조, 제26조의 금지 내용이 있는 출판물이나 기타 불법 출판물을 인쇄하거나 복제, 도매, 소매, 임대, 배포한 경우, 당사자가 불법 출판물의 출처에 대해 설명하거나 자백하여 조사를 거쳐 그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출판물, 불법소득을 몰수하나 기타 행정적 처벌은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70조** 단위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증 회수 취소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단위 등기관리기관이나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말소등기 또는 변경 등기를 필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단위 등기기관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그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시킨다.  **제71조** 단위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증 회수 취소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그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는 허가증이 회수 취소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 발행단위의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를 담임할 수 없다.  출판 종업인원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정이 심각한 경우 원 증서 발급기관에서 그 자격증을 말소시킨다.  **제72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벌금 행정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과 벌금 수납을 분리시켜야 하며, 징수한 벌금은 전액 국고에 상납해야 한다.  **제9조 벌 칙**  **제73조** 행정법규가 음반 영상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 복제, 수입, 발행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  경외기구 또는 개인의 증여 출판물의 관리방법, 구독자의 경외 출판물 주문 관리방법, 인터넷출판 심사허가 및 관리방법은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서가 이 조례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제74조** 이 조례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1월 2일 국무원이 반포한 《출판 관리조례》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  | **出版管理条例**  （2001年12月25日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令第343号公布, 根据2011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出版管理  条例〉的决定》修订）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对出版活动的管理，发展和繁荣有中国特色社会主义出版产业和出版事业，保障公民依法行使出版自由的权利，促进社会主义精神文明和物质文明建设，根据宪法，制定本条例。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出版活动，适用本条例。  本条例所称出版活动，包括出版物的出版、印刷或者复制、进口、发行。  　　本条例所称出版物，是指报纸、期刊、图书、音像制品、电子出版物等。  **第三条**　出版活动必须坚持为人民服务、为社会主义服务的方向，坚持以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邓小平理论和“三个代表”重要思想为指导，贯彻落实科学发展观，传播和积累有益于提高民族素质、有益于经济发展和社会进步的科学技术和文化知识，弘扬民族优秀文化，促进国际文化交流，丰富和提高人民的精神生活。  **第四条**　从事出版活动，应当将社会效益放在首位，实现社会效益与经济效益相结合。  **第五条**　公民依法行使出版自由的权利，各级人民政府应当予以保障。  　　公民在行使出版自由的权利的时候，必须遵守宪法和法律，不得反对宪法确定的基本原则，不得损害国家的、社会的、集体的利益和其他公民的合法的自由和权利。  **第六条**　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的出版活动的监督管理工作。国务院其他有关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分工，负责有关的出版活动的监督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负责出版管理的部门（以下简称出版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出版活动的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有关的出版活动的监督管理工作。  **第七条**　出版行政主管部门根据已经取得的违法嫌疑证据或者举报，对涉嫌违法从事出版物出版、印刷或者复制、进口、发行等活动的行为进行查处时，可以检查与涉嫌违法活动有关的物品和经营场所；对有证据证明是与违法活动有关的物品，可以查封或者扣押。  **第八条**　出版行业的社会团体按照其章程，在出版行政主管部门的指导下，实行自律管理。  **第二章　出版单位的设立与管理**  **第九条**　报纸、期刊、图书、音像制品和电子出版物等应当由出版单位出版。  　　本条例所称出版单位，包括报社、期刊社、图书出版社、音像出版社和电子出版物出版社等。  　　法人出版报纸、期刊，不设立报社、期刊社的，其设立的报纸编辑部、期刊编辑部视为出版单位。  **第十条**　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制定全国出版单位总量、结构、布局的规划，指导、协调出版产业和出版事业发展。  **第十一条**　设立出版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出版单位的名称、章程；  （二）有符合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认定的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  （三）有确定的业务范围；  （四）有30万元以上的注册资本和固定的工作场所；  （五）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组织机构和符合国家规定的资格条件的编辑出版专业人员；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审批设立出版单位，除依照前款所列条件外，还应当符合国家关于出版单位总量、结构、布局的规划。  **第十二条**　设立出版单位，由其主办单位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同意后，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审批。设立的出版单位为事业单位的，还应当办理机构编制审批手续。  **第十三条**　设立出版单位的申请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出版单位的名称、地址；  　　（二）出版单位的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的名称、地址；  　　（三）出版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住址、资格证明文件；  　　（四）出版单位的资金来源及数额。  　　设立报社、期刊社或者报纸编辑部、期刊编辑部的，申请书还应当载明报纸或者期刊的名称、刊期、开版或者开本、印刷场所。  　　申请书应当附具出版单位的章程和设立出版单位的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的有关证明材料。  **第十四条**　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设立出版单位的申请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书面通知主办单位；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第十五条**　设立出版单位的主办单位应当自收到批准决定之日起60日内，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登记，领取出版许可证。登记事项由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规定。  　　出版单位领取出版许可证后，属于事业单位法人的，持出版许可证向事业单位登记管理机关登记，依法领取事业单位法人证书；属于企业法人的，持出版许可证向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依法领取营业执照。  **第十六条**　报社、期刊社、图书出版社、音像出版社和电子出版物出版社等应当具备法人条件，经核准登记后，取得法人资格，以其全部法人财产独立承担民事责任。  　　依照本条例第九条第三款的规定，视为出版单位的报纸编辑部、期刊编辑部不具有法人资格，其民事责任由其主办单位承担。  **第十七条**　出版单位变更名称、主办单位或者其主管机关、业务范围、资本结构，合并或者分立，设立分支机构，出版新的报纸、期刊，或者报纸、期刊变更名称的，应当依照本条例第十二条、第十三条的规定办理审批手续。出版单位属于事业单位法人的，还应当持批准文件到事业单位登记管理机关办理相应的登记手续；属于企业法人的，还应当持批准文件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相应的登记手续。  出版单位除前款所列变更事项外的其他事项的变更，应当经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审查同意，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申请变更登记，并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出版单位属于事业单位法人的，还应当持批准文件到事业单位登记管理机关办理变更登记；属于企业法人的，还应当持批准文件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  **第十八条**　出版单位中止出版活动的，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并说明理由和期限；出版单位中止出版活动不得超过180日。  出版单位终止出版活动的，由主办单位提出申请并经主管机关同意后，由主办单位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办理注销登记，并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出版单位属于事业单位法人的，还应当持批准文件到事业单位登记管理机关办理注销登记；属于企业法人的，还应当持批准文件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注销登记。  **第十九条**　图书出版社、音像出版社和电子出版物出版社自登记之日起满180日未从事出版活动的，报社、期刊社自登记之日起满90日未出版报纸、期刊的，由原登记的出版行政主管部门注销登记，并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  　　因不可抗力或者其他正当理由发生前款所列情形的，出版单位可以向原登记的出版行政主管部门申请延期。  **第二十条**　图书出版社、音像出版社和电子出版物出版社的年度出版计划及涉及国家安全、社会安定等方面的重大选题，应当经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后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涉及重大选题，未在出版前报备案的出版物，不得出版。具体办法由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制定。  　　期刊社的重大选题，应当依照前款规定办理备案手续。  **第二十一条**　出版单位不得向任何单位或者个人出售或者以其他形式转让本单位的名称、书号、刊号或者版号、版面，并不得出租本单位的名称、刊号。  出版单位及其从业人员不得利用出版活动谋取其他不正当利益。  **第二十二条**　出版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国家图书馆、中国版本图书馆和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免费送交样本。  **第三章　出版物的出版**  **第二十三条**　公民可以依照本条例规定，在出版物上自由表达自己对国家事务、经济和文化事业、社会事务的见解和意愿，自由发表自己从事科学研究、文学艺术创作和其他文化活动的成果。  　　合法出版物受法律保护，任何组织和个人不得非法干扰、阻止、破坏出版物的出版。  **第二十四条**　出版单位实行编辑责任制度，保障出版物刊载的内容符合本条例的规定。  **第二十五条**　任何出版物不得含有下列内容：  　　（一）反对宪法确定的基本原则的；  　　（二）危害国家统一、主权和领土完整的；  　　（三）泄露国家秘密、危害国家安全或者损害国家荣誉和利益的；  　　（四）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破坏民族团结，或者侵害民族风俗、习惯的；  　　（五）宣扬邪教、迷信的；  　　（六）扰乱社会秩序，破坏社会稳定的；  　　（七）宣扬淫秽、赌博、暴力或者教唆犯罪的；  　　（八）侮辱或者诽谤他人，侵害他人合法权益的；  　　（九）危害社会公德或者民族优秀文化传统的；  　　（十）有法律、行政法规和国家规定禁止的其他内容的。  **第二十六条**　以未成年人为对象的出版物不得含有诱发未成年人模仿违反社会公德的行为和违法犯罪的行为的内容，不得含有恐怖、残酷等妨害未成年人身心健康的内容。  **第二十七条**　出版物的内容不真实或者不公正，致使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合法权益受到侵害的，其出版单位应当公开更正，消除影响，并依法承担其他民事责任。  　　报纸、期刊发表的作品内容不真实或者不公正，致使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合法权益受到侵害的，当事人有权要求有关出版单位更正或者答辩，有关出版单位应当在其近期出版的报纸、期刊上予以发表；拒绝发表的，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二十八条**　出版物必须按照国家的有关规定载明作者、出版者、印刷者或者复制者、发行者的名称、地址，书号、刊号或者版号，在版编目数据，出版日期、刊期以及其他有关事项。  出版物的规格、开本、版式、装帧、校对等必须符合国家标准和规范要求，保证出版物的质量。  出版物使用语言文字必须符合国家法律规定和有关标准、规范。  **第二十九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伪造、假冒出版单位名称或者报纸、期刊名称出版出版物。  **第三十条**　中学小学教科书由国务院教育行政主管部门审定；其出版、发行单位应当具有适应教科书出版、发行业务需要的资金、组织机构和人员等条件，并取得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的教科书出版、发行资质。纳入政府采购范围的中学小学教科书，其发行单位按照《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的有关规定确定。其他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从事中学小学教科书的出版、发行业务。  **第四章　出版物的印刷或者复制和发行**  **第三十一条**　从事出版物印刷或者复制业务的单位，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经审核许可，并依照国家有关规定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相关手续后，方可从事出版物的印刷或者复制。  　　未经许可并办理相关手续的，不得印刷报纸、期刊、图书，不得复制音像制品、电子出版物。  **第三十二条**　出版单位不得委托未取得出版物印刷或者复制许可的单位印刷或者复制出版物。  　　出版单位委托印刷或者复制单位印刷或者复制出版物的，必须提供符合国家规定的印刷或者复制出版物的有关证明，并依法与印刷或者复制单位签订合同。  　　印刷或者复制单位不得接受非出版单位和个人的委托印刷报纸、期刊、图书或者复制音像制品、电子出版物，不得擅自印刷、发行报纸、期刊、图书或者复制、发行音像制品、电子出版物。  **第三十三条**　印刷或者复制单位经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可以承接境外出版物的印刷或者复制业务；但是，印刷或者复制的境外出版物必须全部运输出境，不得在境内发行。  境外委托印刷或者复制的出版物的内容，应当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委托人应当持有著作权人授权书，并向著作权行政管理部门登记。  **第三十四条**　印刷或者复制单位应当自完成出版物的印刷或者复制之日起2年内，留存一份承接的出版物样本备查。  **第三十五条** 从事出版物总发行业务的单位，经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后，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  　　从事出版物批发业务的单位，须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许可。  从事出版物零售业务的单位和个体工商户，须经县级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许可。  从事出版物连锁经营业务的单位，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经营的，应当经其总部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跨省或者在全国范围内经营的，应当经其总部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后，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  从事出版物发行业务的单位和个体工商户经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取得《出版物经营许可证》，并向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领取营业执照后，方可从事出版物发行业务。  **第三十六条** 通过互联网等信息网络从事出版物发行业务的单位或者个体工商户，应当依照本条例规定取得《出版物经营许可证》。  提供网络交易平台服务的经营者应当对申请通过网络交易平台从事出版物发行业务的单位或者个体工商户的经营主体身份进行审查，验证其《出版物经营许可证》。  **第三十七条** 从事出版物发行业务的单位和个体工商户变更《出版物经营许可证》登记事项，或者兼并、合并、分立的，应当依照本条例第三十五条的规定办理审批手续，并持批准文件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相应的登记手续。  从事出版物发行业务的单位和个体工商户终止经营活动的，应当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注销登记，并向原批准的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  **第三十八条**　出版单位可以发行本出版单位出版的出版物，不得发行其他出版单位出版的出版物。  **第三十九条**　国家允许设立从事图书、报纸、期刊、电子出版物发行业务的中外合资经营企业、中外合作经营企业、外资企业。  **第四十条**　印刷或者复制单位、发行单位不得印刷或者复制、发行有下列情形之一的出版物：  （一）含有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禁止内容的；  （二）非法进口的；  （三）伪造、假冒出版单位名称或者报纸、期刊名称的；  （四）未署出版单位名称的；  （五）中学小学教科书未经依法审定的；  （六）侵犯他人著作权的。  **第五章　出版物的进口**  **第四十一条**　出版物进口业务，由依照本条例设立的出版物进口经营单位经营；其他单位和个人不得从事出版物进口业务。  **第四十二条**　设立出版物进口经营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一）有出版物进口经营单位的名称、章程；  　　（二）有符合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认定的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  （三）有确定的业务范围；  （四）具有进口出版物内容审查能力；  （五）有与出版物进口业务相适应的资金；  （六）有固定的经营场所；  （七）法律、行政法规和国家规定的其他条件。  **第四十三条**　设立出版物进口经营单位，应当向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经审查批准，取得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核发的出版物进口经营许可证后，持证到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领取营业执照。  　　设立出版物进口经营单位，还应当依照对外贸易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相应手续。  **第四十四条** 出版物进口经营单位变更名称、业务范围、资本结构、主办单位或者其主管机关，合并或者分立，设立分支机构，应当依照本条例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的规定办理审批手续，并持批准文件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相应的登记手续。  **第四十五条**　出版物进口经营单位进口的出版物，不得含有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禁止的内容。  　　出版物进口经营单位负责对其进口的出版物进行内容审查。省级以上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可以对出版物进口经营单位进口的出版物直接进行内容审查。出版物进口经营单位无法判断其进口的出版物是否含有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禁止内容的，可以请求省级以上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进行内容审查。省级以上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应出版物进口经营单位的请求，对其进口的出版物进行内容审查的，可以按照国务院价格主管部门批准的标准收取费用。  　　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可以禁止特定出版物的进口。  **第四十六条**　出版物进口经营单位应当在进口出版物前将拟进口的出版物目录报省级以上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省级以上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发现有禁止进口的或者暂缓进口的出版物的，应当及时通知出版物进口经营单位并通报海关。对通报禁止进口或者暂缓进口的出版物，出版物进口经营单位不得进口，海关不得放行。  　　出版物进口备案的具体办法由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制定。  **第四十七条**　发行进口出版物的，必须从依法设立的出版物进口经营单位进货。  **第四十八条**　出版物进口经营单位在境内举办境外出版物展览，必须报经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未经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举办境外出版物展览。  依照前款规定展览的境外出版物需要销售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相关手续。  **第六章 监督与管理**  **第四十九条**　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对本行政区域内出版单位出版活动的日常监督管理；出版单位的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对所属出版单位出版活动负有直接管理责任，并应当配合出版行政主管部门督促所属出版单位执行各项管理规定。  出版单位和出版物进口经营单位应当按照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的规定，将从事出版活动和出版物进口活动的情况向出版行政主管部门提出书面报告。  **第五十条** 出版行政主管部门履行下列职责：  （一）对出版物的出版、印刷、复制、发行、进口单位进行行业监管，实施准入和退出管理；  （二）对出版活动进行监管，对违反本条例的行为进行查处；  （三）对出版物内容和质量进行监管；  （四）根据国家有关规定对出版从业人员进行管理。  **第五十一条** 出版行政主管部门根据有关规定和标准，对出版物的内容、编校、印刷或者复制、装帧设计等方面质量实施监督检查。  **第五十二条** 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制定出版单位综合评估办法，对出版单位分类实施综合评估。  出版物的出版、印刷或者复制、发行和进口经营单位不再具备行政许可的法定条件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仍未改正的，由原发证机关撤销行政许可。  **第五十三条** 国家对在出版单位从事出版专业技术工作的人员实行职业资格制度；出版专业技术人员通过国家专业技术人员资格考试取得专业技术资格。具体办法由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主管部门、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共同制定。  **第七章　保障与奖励**  **第五十四条**　国家制定有关政策，保障、促进出版产业和出版事业的发展与繁荣。  **第五十五条**　国家支持、鼓励下列优秀的、重点的出版物的出版：  　　（一）对阐述、传播宪法确定的基本原则有重大作用的；  　　（二）对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体系，在人民中进行爱国主义、集体主义、社会主义和民族团结教育以及弘扬社会公德、职业道德、家庭美德有重要意义的；  　　（三）对弘扬民族优秀文化，促进国际文化交流有重大作用的；  （四）对推进文化创新，及时反映国内外新的科学文化成果有重大贡献的；  （五）对服务农业、农村和农民，促进公共文化服务有重大作用的；  （六）其他具有重要思想价值、科学价值或者文化艺术价值的。  **第五十六条**　国家对教科书的出版发行，予以保障。  　　国家扶持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物和盲文出版物的出版发行。  　　国家对在少数民族地区、边疆地区、经济不发达地区和在农村发行出版物，实行优惠政策。  **第五十七条**　报纸、期刊交由邮政企业发行的，邮政企业应当保证按照合同约定及时、准确发行。  　　承运出版物的运输企业，应当对出版物的运输提供方便。  **第五十八条**　对为发展、繁荣出版产业和出版事业作出重要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奖励。  **第五十九条**　对非法干扰、阻止和破坏出版物出版、印刷或者复制、进口、发行的行为，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及其他有关部门，应当及时采取措施，予以制止。  **第八章　法律责任**  **第六十条**　出版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他人财物或者其他好处，批准不符合法定设立条件的出版、印刷或者复制、进口、发行单位，或者不履行监督职责，或者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造成严重后果的，依法给予降级直至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照刑法关于受贿罪、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一条**　未经批准，擅自设立出版物的出版、印刷或者复制、进口、发行单位，或者擅自从事出版物的出版、印刷或者复制、进口、发行业务，假冒出版单位名称或者伪造、假冒报纸、期刊名称出版出版物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法定职权予以取缔；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没收出版物、违法所得和从事违法活动的专用工具、设备，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侵犯他人合法权益的，依法承担民事责任。  **第六十二条**　有下列行为之一，触犯刑律的，依照刑法有关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停业整顿，没收出版物、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一）出版、进口含有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禁止内容的出版物的；  　　（二）明知或者应知出版物含有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禁止内容而印刷或者复制、发行的；  　　（三）明知或者应知他人出版含有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禁止内容的出版物而向其出售或者以其他形式转让本出版单位的名称、书号、刊号、版号、版面，或者出租本单位的名称、刊号的。  **第六十三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出版物、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限期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一）进口、印刷或者复制、发行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禁止进口的出版物的；  　　（二）印刷或者复制走私的境外出版物的；  　　（三）发行进口出版物未从本条例规定的出版物进口经营单位进货的。  **第六十四条**　走私出版物的，依照刑法关于走私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海关依照海关法的规定给予行政处罚。  **第六十五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没收出版物、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限期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一）出版单位委托未取得出版物印刷或者复制许可的单位印刷或者复制出版物的；  （二）印刷或者复制单位未取得印刷或者复制许可而印刷或者复制出版物的；  （三）印刷或者复制单位接受非出版单位和个人的委托印刷或者复制出版物的；  （四）印刷或者复制单位未履行法定手续印刷或者复制境外出版物的，印刷或者复制的境外出版物没有全部运输出境的；  （五）印刷或者复制单位、发行单位或者个体工商户印刷或者复制、发行未署出版单位名称的出版物的；  （六）出版、印刷、发行单位出版、印刷、发行未经依法审定的中学小学教科书，或者非依照本条例规定确定的单位从事中学小学教科书的出版、发行业务的。  **第六十六条**　出版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给予警告，没收违法经营的出版物、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限期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一）出售或者以其他形式转让本出版单位的名称、书号、刊号、版号、版面，或者出租本单位的名称、刊号的；  （二）利用出版活动谋取其他不正当利益的。  **第六十七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责令限期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一）出版单位变更名称、主办单位或者其主管机关、业务范围，合并或者分立，出版新的报纸、期刊，或者报纸、期刊改变名称，以及出版单位变更其他事项，未依照本条例的规定到出版行政主管部门办理审批、变更登记手续的；  　　（二）出版单位未将其年度出版计划和涉及国家安全、社会安定等方面的重大选题备案的；  （三）出版单位未依照本条例的规定送交出版物的样本的；  （四）印刷或者复制单位未依照本条例的规定留存备查的材料的；  （五）出版进口经营单位未将其进口的出版物目录报送备案的；  （六）出版单位擅自中止出版活动超过180日的；  （七）出版物发行单位、出版物进口经营单位未依照本条例的规定办理变更审批手续的；  （八）出版物质量不符合有关规定和标准的。  **第六十八条**　未经批准，举办境外出版物展览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出版物、违法所得；情节严重的，责令限期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第六十九条**　印刷或者复制、批发、零售、出租、散发含有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禁止内容的出版物或者其他非法出版物的，当事人对非法出版物的来源作出说明、指认，经查证属实的，没收出版物、违法所得，可以减轻或者免除其他行政处罚。  **第七十条**　单位违反本条例，被处以吊销许可证行政处罚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到事业单位登记管理机关或者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注销登记或者变更登记；逾期未办理的，由事业单位登记管理机关撤销登记或者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  **第七十一条**　单位违反本条例被处以吊销许可证行政处罚的，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自许可证被吊销之日起10年内不得担任出版、印刷或者复制、进口、发行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  出版从业人员违反本条例规定，情节严重的，由原发证机关吊销其资格证书。  **第七十二条**　依照本条例的规定实施罚款的行政处罚，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实行罚款决定与罚款收缴分离；收缴的罚款必须全部上缴国库。  **第九章　附　则**  **第七十三条**　行政法规对音像制品和电子出版物的出版、复制、进口、发行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接受境外机构或者个人赠送出版物的管理办法、订户订购境外出版物的管理办法、网络出版审批和管理办法，由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根据本条例的原则另行制定。  **第七十四条**　本条例自2002年2月1日起施行。1997年1月2日国务院发布的《出版管理条例》同时废止。 |